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연월일	20 . . . (제 회)	

방 송 법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

제 출 자	
제출 연월일	20 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록 취소 대상 확인 방법 및 절차 구체화
 - 등록은 되어있으나 방송을 하지 않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경우 등록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도록 「방송법」이 개정(법률 제16750호, 2019. 12. 10. 공포, 2020. 6. 11. 시행)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등록 취소 대상 확인 방법 및 절차를 구체화 하려는 것임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생 략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- 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 2) 사전규제심사 결과 : 비규제
 3) 입법예고 전

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방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.

1. 5년 이상 계속하여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방송실시결과를 미제출하였는지 여부

2.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 등 영업의 폐지 여부

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7조(허가·승인·등록의 취소 등) ① (생략)	제17조(허가·승인·등록의 취소 등) ① (현행과 같음)
<신설>	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. 1. 5년 이상 계속하여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방송실시결과를 미제출하였는지 여부 2.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 등 영업의 폐지 여부
② (생략)	③ (현행 제2항과 같음)
<신설>	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.
③~⑤ (생략)	⑤~⑦ (현행 제3항부터 제5항까지와 같음)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산업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02-6523